부록 농촌지도사업 관련 법령현황

1. 농촌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 613

2.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 629

3.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 631

4. 국고보조금 관리 관련 법령 및 시행령(요약) ····· 637

농촌지도사업 관련 법령 현황

1. 농촌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 농촌진흥법

[전문개정 1995. 12. 6 법률 제5020호]
개정 1996. 8. 8 법률 제5153호 (정부조직법)
1999. 2. 5 법률 제5758호 (농업·농촌기본법)
2001. 1. 16 법률 제6353호 (과학기술기본법)
2003. 12. 11 법률 제6997호 (농업·농촌기본법)
2007. 5. 11 법률 제8423호 (지방자치법).
2007. 7. 13 법률 제8503호 (농촌진흥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 및 농업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정의) ①이 법에서 "시험연구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농업과학기술(축산업, 가축위생, 잠업, 버섯의 육종·재배, 농·축산물의 저장·이용 및 가공과 농기계·농약·비료등 농자재의 개량에 관한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농업생물산업을 위한 첨단기술개발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3. 주요우량작물·채소종자·누에씨, 뽕나무묘목, 화훼종묘, 우량과수의 묘목, 유용미생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과 가축전염병예방약의 개발 및 생산
4. 농기계·농약·비료등 농자재의 표준규격의 설정 및 품질관리
5. 농업경영의 적정규모화·능률화 및 협업화와 농업과 관련된 법인등 농업생산조직체의 경영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6. 농촌생활 및 농촌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②이 법에서 "농촌지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 조직의 육성
2. 농촌청소년 및 후계농업경영인등 농업후계인력의 육성
3. 농·축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종축의 보급
4. 제1항의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5.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및 보급
6. 농작물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7. 농작물의 품질 및 품위향상을 위한 지도
8.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방역기술지도

③이 법에서 "교육훈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을 말한다.

1.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2. 농업관련 산업계·학계·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이하 "농업산·학협동"이라 한다)에 의한 농과계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훈련
3. 농업인·농촌청소년·농촌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4.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
5. 전업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등 전문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제3조 (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5.11 >

제4조 (사업의 실시 및 조정) ①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공공단체외의 단체가 농촌지도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시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시험연구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시험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이 행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조정하여 시험연구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그 효율을 높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사항
3. 연구인력의 양성·확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⑤삭제 <2007.7.13> <시행일 2008.1.14>

⑥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의한 농촌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2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 ①농촌진흥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농촌지도사업의 목표
2. 농촌지도사업의 시책방향
3. 농촌지도사업의 추진과제 및 내용
4. 농업과학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을 시달 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7.7.13 > < 시행일 2008.1.14 >

제5조 (공동연구개발) ①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연구기관·대학교수·관계전문가 및 농업인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연구기관·관계대학·관계전문가 및 농업인등에게 이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의 대상사업 기타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①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한다.<개정 1999.2.5>

1. 농업기초과학기술의 연구개발
2. 기초농산물·수출유망작목에 관한 연구개발 및 농업유전공학에 관한 응용연구
3. 농업·농촌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술의 개발
4. 선도기술의 개발
5. 첨단농업생물산업화에 관한 연구개발
6. 지역특성에 맞는 새 기술의 개발 및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과학기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미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1.1.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교육훈련의 실시) ①농촌진흥청장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본계획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및 전문농업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지원시책등의 건의) ①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의한 시험연구사업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그에 대한 지원등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거나 농림부장관에게 지원시책등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연구사업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지원등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농림부장관에게 지원시책등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책등에 대한 건의를 받은 농림부장관은 이에 대한 지원시책등을 강구하여 개발된 기술등이 농가에 신속히 보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지도직공무원) ①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을 둔다.

②연구공무원은 시험연구업무 또는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지도공무원은 농촌지도업무 또는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정년으로 퇴직한 연구공무원으로서 그 재직중의 업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시험연구업무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지도공무원의 자격등) ①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담당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전문학술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②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수당·위촉방법 및 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연구·지도공무원의 복무)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이 법에 정한 사업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3조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①국가는 농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는 농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등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①농촌진흥청장은 소속시험연구기관이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이 사용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징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술사용료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출원하는 경우 특허등록전이라도 당해 기술을 조기에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특허등록전까지 이를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기술을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농업산·학협동사업의 추진)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산·학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 (농업산·학협동사업의 지원) 정부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산·학협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에서 농촌진흥기관이 농과계 학교·농업단체·연구기관·기업·농업인과 농업산·학협동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권한의 위임) 농촌진흥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농촌진흥법 제7조의 규정"을 "농촌진흥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부 칙 <1996. 8. 8 제515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1999. 2. 5 제575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 칙 <2001. 1. 16 제635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5조 생략

부 칙 <2003. 12. 11 제699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부 칙 <2007. 5. 11 제842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3조"로 한다.
⑧ 내지 <27>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 <2007.7.13 제850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촌진흥법시행령

[1996. 3. 20 대통령령 제14952호]

개정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물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물을 말한다.

1. 자생식물중 형질의 개량에 의하여 농산물의 생산이 가능한 작물
2.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작물

제3조(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 ①농촌진흥청장은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농촌지도사업의 목표
2. 농촌지도사업의 시책방향
3. 농촌지도사업의 추진과제 및 내용
4. 농업과학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지도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을 시달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연구사업의 심의·조정) 농촌진흥청장은 시험연구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조제4항각호에 규정된 업무의 심의·조정에 앞서 동 업무추진에 관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소속시험연구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하고, 그 기본지침을 기준으로 심의·조정업무를 행한다.

제5조(공동연구대상사업)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품질·안전농산물생산기술의 개발
2. 수출지향전략작목의 개발

3. 첨단기초농업과학기술을 이용한 응용기술의 개발
4. 농업과 다른 산업분야와의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실용화기술의 개발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실용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개발
6. 국내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외국의 연구기관·국제연구기관·국제기구 및 외국의 대학과의 국제공동연구사업
7.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공동연구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의 개발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하여 대상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공동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하여금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동연구개발협약의 체결) ①농촌진흥청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체결대상자가 지방농촌진흥기관·연구기관·대학·기업 및 농업인단체(이하 “공동연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공동연구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연구개발과제의 명칭·개발의 범위·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출연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3.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7. 협약의 변경 및 해약
8. 협약의 위반에 관한 사항
9. 기타 공동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출연금을 지급받은 공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는 회계년도가 종료하거나 당해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3월이내에 출연금집행실적보고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농업과학기술개발시행계획) ①농촌진흥청장은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과학기술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시험연구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농업과학기술개발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분야별 농업과학기술개발계획
3. 농업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투자계획
4. 농촌진흥청소속 시험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소속 시험연구기관간의 협력방안
5. 기타 농업과학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소속 시험연구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과학기술개발시행계획을 시달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업과학기술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기본계획)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훈련의 목표 및 방향
2. 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
3. 교육훈련의 구분 및 교육방법
4.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교육훈련기관) ①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촌진흥청
2.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농촌진흥기관

3. 지방자치단체소속 교육훈련기관
4. 농촌진흥청장이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할 교육훈련시설기준은 교육훈련과정 및 대상별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교육훈련기관중 경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협조)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교육훈련교재의 편찬
3. 교육훈련시설과 기자재 및 실습포장의 공동이용
4. 교육훈련강사의 지원
5. 교육훈련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6.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제11조(명예직연구관의 자격) ①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자로서 재임중의 연구실적이 현저하고 재직시의 직위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 2의 제1호가목·나목 또는 제2호가목의 직위에 있었던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의 직명은 “명예직연구관”으로 한다.

제12조(위촉기간 및 수당등) ①명예직연구관의 위촉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②명예직연구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촉받은 시험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한 연구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해촉) ①농촌진흥청장은 명예직연구관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3. 위촉기간중 담당연구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4.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14조(복무) ①명예직연구관 또는 명예직연구관이었던 자는 재직중 직무상 알게 되었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명예직연구관은 상근으로 근무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촉받은 시험연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교·단체 또는 개인은 보조금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설계서 및 그 내역서와 설계도면(시설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에 한하되, 기성시설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매매계약서(장비 또는 기성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4. 직제·규약 또는 정관(학교·단체에 한한다)
5.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6조(보조금의 지급등) ①농촌진흥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등을 통하여 그 신청의 내용을 심사한 후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가 결정된 보조금은 매분기별로 분할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조할 사업 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비의 전부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이 당해 공동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그 공동연구개발성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한 보급이 필요한 경우
2. 수출진흥 또는 수입대체등 국내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농업환경보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보급이 필요한 경우
4. 중소기업지원·육성등 정부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사용)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출원중인 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술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기술사용료의 산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상금의 지급) ①농촌진흥청장은 유상으로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게 한 때에는 기술사용료의 연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권리 매 1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면제한 경우에도 당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제1항의 경우에 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산정방법은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23조(특허청장과의 협의) 농촌진흥청장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승계시 계약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

3. 기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및 직무발명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

제24조(권한의 위임) ①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소속 시험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농업산학협동기금운영관리규정·농촌진흥사업보조금교부규정·농촌진흥청명예직연구관규정 및 영농기술훈련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명예직연구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농촌진흥청명예직연구관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직연구관은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의2를 삭제한다.

부 칙<1996. 8.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농촌진흥법시행규칙

[1996. 3. 20 농림수산부령 제1,22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과학기술지원단의 운영) ①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보급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과학기술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농업과학기술지원단의 설치·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3조(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연구대상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2. 공동연구대상사업별 연구개발비 및 사업기간
3. 공동연구대상사업결과의 활용방안
4. 기타 공동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농촌진흥청장은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협약에 의한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동연구개발대상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및 예산사정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공동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영 제1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는 별지제1호서식과 같다.

제6조(사업계약의 신청)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연구개발성과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계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촌진흥청소속시험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에 관한 다음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계획의 개요
   나. 사업계획의 내용
      (1) 시설규모(생산능력을 기재할 것)
      (2) 연도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수량 및 금액을 기재할 것)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기술사용료의 견적서(영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

제7조(연구개발성과의 사용계약) 영 제17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연구개발성과의 표시

2. 당해 공동연구개발성과의 상호지분율(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에 한한다)
3. 기술사용료 및 사용기간
4. 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
5. 기술사용료의 보증에 관한 사항
6.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사용상황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과 관련된 사항

제8조(기술사용료 산정방법)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출원중인 직무발명기술사용료 : 국유특허권의처분·관리규정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
2. 공동연구개발성과기술사용료 : 국유특허권의처분·관리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된 금액에 국가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제9조(기술사용료등의 납부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료는 그 사용기간중 매년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상황의 보고) 농촌진흥청소속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등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기종료후 10일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영농기술훈련규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농촌진흥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생략)
[별지 제2호 서식]사용계약신청서(생략)
[별지 제3호 서식]기술사용료 견적서(생략)

2.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2007. 12. 21 법률 제 8758호]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 〔Head, 智育〕, 충성스런 마음〔Heart, 德育〕, 부지런한 손〔Hands, 勞育〕 및 건장한 몸〔Health, 體育〕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라 함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 훈련 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 활동

라. 그 밖의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전문인력과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최근 1년 이상 전국적인 규모의 4에이치활동 지원실적이 있을 것

제5조(경비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산보고)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검사 등) 농촌진흥청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주관단체가 정한 수용품 및 표지를 제작·사용할 수 없다

제10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수용품 또는 표지를 제작·사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1971. 12. 28 대통령령 제 5889호]

개정 1972. 12. 28 대통령령 제 6421호
1974. 7. 18 대통령령 제 7202호
1978. 11. 27 대통령령 제 9209호
1979. 2. 24 대통령령 제 9349호
1979. 8. 27 대통령령 제 9576호
1982. 12. 31 대통령령 제11000호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2호
1994. 5. 16 대통령령 제14260호
1995. 9. 28 대통령령 제14773호
1996. 3. 20 대통령령 제14952호(농촌진흥법시행령)
1998. 2. 28 대통령령 제15720호(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7. 6. 11 대통령령 제2008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 제 2조에 따른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이하 "농촌진흥사업"이라 한다)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촌진흥기관과 농과계학교·농업단체 및 농업인간에 농업산·학·관·연협동(이하 "농업산·학협동"이라 한다) 체계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4. 7. 18, '79. 8. 27, '94. 5. 16, '95. 9. 28, 2007. 6. 11>

제1조의2(농업단체의 범위) 이 영에서 "농업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농산물의 생산·가공·판매 등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품목별 농업인의 조직체
4.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농업산·학협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본조신설 '95. 9. 28]

제2조(설치) 농업산·학협동에 관한 주요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중앙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중앙심

의회"라 한다)를, 도에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도심의회"라 한다)를,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시·군에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시·군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91. 2. 1, '95. 9. 28, 2007. 6. 11>

제3조(중앙심의회의 구성) ①중앙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각 2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72. 12. 28, '79. 8. 27, 2007. 6. 11>

②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이, 부위원장은 학계에서 추천하는 농과계 대학의 학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와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단체장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79. 8. 27, '82. 12. 31, '91. 2. 1, '94. 5. 16, '95. 9. 28, 2001. 1. 29, 2007. 6. 11>

1. 교육인적자원부·농수산부·과학기술처·산림청 및 농촌진흥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자 각 1인(농림부 및 농촌진흥청의 경우에는 각 2인)
2. <삭제>
3. 사단법인 한국농업교육협회장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집행간부중에서 당해 중앙회장이 지정하는 자 각 1인
5.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내

③제2항 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72. 12. 28, '82. 12. 31, '95. 9. 28>

제4조(중앙심의회의 기능) 중앙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촌진흥사업의 추진을 위한 학계·산업계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도심의회에서 심의 조정을 요구한 사항
3. 도심의회의 농업산·학협동에 관한 기준의 설정과 업무조정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농촌진흥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7. 6. 11〕

제5조(도심의회의 구성) ①도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4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79. 8. 27>

②도심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도농업기술원장이, 부위원장은 당해 도와 도에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국·공립 농과계 대학의 학장 중에서 도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된다 <개정 2007. 6. 11>

1. 도·도교육위원회 및 도농업기술원 소속의 국장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자 각 1인(도농업기술원의 경우에는 2인)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각 1인
3.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4인 이내
4.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2인 이내

③제2항 제3호·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94. 5. 16, '95. 9. 28, 2007. 6. 11>

제6조(도심의회의 기능) 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도 농촌진흥사업의 추진을 위한 학계, 산업계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군 심의회에서 심의조정을 요구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도 농촌진흥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7. 6. 11〕

제6조의2(시·군심의회의 구성) ①시·군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시·군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7. 6. 11〉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4인이내(제2호의 위원이 없는 시·군의 경우에는 5인 이내)

가. 당해 지역에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또는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나. 당해 지역에 있는 농과계고등학교의 교원

다. 시·군의 농업관련업무담당과장 및 농업연구·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도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시험장장(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산림조합장 각 1인

4. 제3호외의 농업단체대표 7인 이내

5.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인 이내

③부위원장 및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95. 9. 28]

제6조의3(시·군심의회의 기능) ①시·군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 6. 11〉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7. 6. 11〉

3. 「농업 농촌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1조의2 각호의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시·군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중 도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1〉

. 〔본조신설 '95. 2. 28 〕

제7조(위원장등) ①각급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각급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회한다. < 개정 '94. 5. 16 >

③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각급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전문위원회) ①각급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당해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 개정 '94. 5. 16 >

제10조(회의록) ①각급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 ①각급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소속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①각급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두되, 관계기관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①각급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5. 9. 28 >

③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79. 8. 27]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급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 심의회의 의견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95. 9. 28>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농사연구지도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72.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4. 7. 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 11. 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2. 24>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 칙 <1994. 5. 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중앙심의회 및 도심의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한 중앙심의회 및 도심의회의 위원으로 보되, 제3조 제2항제4호 및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부 칙 <1995. 9.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정수의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초과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초과정수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6. 3. 20>

①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부 칙<2000.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2001. 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2007. 6. 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6조의 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국고보조금 관리 관련 법령 및 시행령(요약)

○ 근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2006.10.4 법률 제8050호)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513호)

○ 목적 : 보조금예산의 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예산의 편성과 그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보조금 :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 보조사업 :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 중앙관서의 장 :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

○ 보조금예산의 편성

-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 계상신청 :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이전까지 신청**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조금의 예산요구를 하여야 함

-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함

- 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 보조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보조금예산의 통지 :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
- 지방비 부담의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

○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 보조금의 교부신청
- 보조금의 교부결정 : 중앙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보조사업의 수행

- 용도외 사용의 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 :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
- 보조사업의 수행명령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 보조금의 반환

- 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보조금의 반환 :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반환
- 강제징수

○ 보칙

- 별도계정의 설정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 관리
- 재산처분의 제한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검사 :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